



1.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

- **우크라이나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변경 승인**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관련, 우크라이나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변경 승인 알림 [2022년 2월 15일 선적분부터]
- **독일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변경 승인**
독일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변경 승인 알림
- 변경사항: 1.26 Product informaion 에서 (if not identical with 1.1 or 1.11) 삭제
- 적용일: '22.2.14. 선적분 부터 적용
- **아랍에미리트산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**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관련, 아랍에미리트산 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알림
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(원본 2부) 발급
- **미국 켄터키주 및 테네시주산 가금육, 식용란 수입금지**
농식품부는 미국 켄터키산 소재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(HPAI)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켄터키산 및 테네시산 가금육 및 식용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수입금지 대상
- 2022.2.15.(현지시간) 이후 선적되는 켄터키산 및 테네시산 가금육, 식용란
나. 수입금지 제외 대상
-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
- 지정검역물의 멸균·살균·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
- **미국 델라웨어주 및 메릴랜드주산 가금육, 식용란 수입금지**
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를 알려드립니다.
가. 수입금지 대상
- 2022.2.24.(현지시간) 이후 선적되는 델라웨어주 및 메릴랜드주산 가금육, 식용란
나. 수입금지 제외 대상
-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
- 지정검역물의 멸균·살균·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
- **필리핀산 닭고기 수입금지**
필리핀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(HPAI)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닭고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수입금지 대상 : 2022.2.22.(현지시간) 이후 선적되는 필리핀산 닭고기
나. 수입금지 제외 대상 : 지정검역물의 멸균·살균·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

□ 호주산 해외 작업장 수입중단

가. THOMAS BORTHWICK SONS(AUSTRALIA)PTY LTD 해외작업장

나. EST 코드 : 67

다. 2022.02.24. 선적일부터 수입중단

라. 동 작업장에서 수입신고한 소고기(냉동, 발, 소부산물) 니트로푸단대사물질 검출

마. 수입중단 해제시 2년간 정밀검사 실시

2. 식품 관련 주요사항

2022.02.03.

□ 아스파라거스 수입식품 등 검사 지시

가. 검사대상: 아스파라거스

나. 검사항목: 디우론(Diuron)

다. 검사방법: 최초 정밀검사(310, 311)시 시험항목 추가

2022.02.09.

□ 필리핀산 오크라 수입식품 등 검사 지시

가. 수출사: JELFARM PRODUCE PHILS. INC(필리핀)

나. 품목: 오크라

다. 검사 항목(잔류농약): 프로페노포스(Profenofos)

라. 검사방법: 포장장소별 2회

2022.02.10.

□ 베트남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해제

가. 국가 : 베트남

나. 수입중단 해제일 : 2022.02.09. 선적분부터

다. 베트남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

라. NHA MAN COMPANY LIMITED (VN000002825)

BLOCK C, SA DEC INDUSTRIAL PARK, TAN QUY DONG WARD, SA DEC CITY,
DONG THAP PROVINCE, VIETNAM.

마. P AND C INTERNATIONAL DAIRY JSC (VN000002384)

HAMLET 6, VINH TAN COMMUNE, TAN UYEN TOWN, BINH DUONG PROVINCE,
VIETNAM

2022.02.11.

□ 수입식품등 검사지시

가. HA PHU VIET NAM COMPANY LIMITED (베트남)

품목 : 바나나 - 검사항목 : 디메토모르프(Dimethomorph)

포장장소별 2회 정밀검사

나. KRAFT HEINZ FOODS COMPANY (미국)

품목 :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- 검사항목 : 총 아플라톡신

제품별 3회

2022.02.17.

□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

가. 제조사: RUCHI SOYA IND. LTD(인도)

나. 품목: 두류가공품 [제품명 : 탈지대두(박) 포함]

다. 검사항목: 총 아플라톡신 [검사방법: 제품별 3회]

□ 미국산 과·채가공품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

- 가. 제조사: SAN JOAQUIN FIGS INC.(미국)
- 나. 품목: 과·채과공품
- 다. 검사항목: 총 아플라톡신
- 라. 검사방법: 제품별 3회

2022.02.18.

□ 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·임산물 수입신고 안내

- 가. 관련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
- 나. 위 호와 관련하여 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·임산물 등의 경우 수출업소, 포장장소 등을 구분하여 각각 건별로 수입신고를 받고, 검체를 채취(검사)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수출업소, 포장장소 등이 상이한 벌크 형태의 농·임산물 등을 선박에 혼재·선적되어 국내 반입된 경우, 각각 건별로 수입신고 및 검사 불가함

2022.02.18.

□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변경 알림

- 가. 관련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
- 나.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내용(삭제)
1) 남극크릴을 원료(100%)로 제조한 어유 제품에 대한 리놀레산 함량 성적서

2022.02.25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

- 가. 관련: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총리령 제1799호, 2022.2.28.)
- 나. 우리 청 수입식품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수입식품검사소별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2022.2.28.(월)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검사소	현행	조정
평택검사소 (T. 031-999-9562)	평택, 오산, 화성, 안성(일죽면, 죽산면은 제외한다), 용인(남사면으로 한정한다)	평택, 화성(동탄은 제외한다) , 안성(일죽면, 죽산면은 제외한다)
용인검사소 (T. 031-999-9595)	용인(남사면은 제외한다), 수원, 안성(일죽면, 죽산면으로 한정한다)	용인, 수원, 화성(동탄으로 한정한다) 오산 , 안성(일죽면, 죽산면으로 한정한다)

2022.02.28.

□ **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**

검사명령 결과 부적합 반복발생 등에 따른 재지정

변경 전 : 천연향신료 [국가 : 인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] 금속성 이물검사

검사명령기간 : 2021.03.01. ~ 2022.02.28.

변경 후 : 천연향신료 [국가 : 인도, 파키스탄] 금속성 이물검사

검사명령기간 : 2022.03.01. ~ 2023.02.28.

3. 법령정보

□ **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**

기간 :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2017.2.22 개정.시행 2022.02.21.부터 정밀검사 실시

대상 :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.용기.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

내용 :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,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받은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다시 정밀검사를 받는 제도

부처 : 수입검사관리과 043-719-2210

4. 관세정보

□ **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지원사업**

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(FTA)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합니다.

가. 접수기간 : 2022년 03월02일 ~ 2022년 03월18일까지

나.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(매출액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)

다. 문의사항 : 각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

□ **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**

가.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출범 :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

아세안 10개국 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

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나. 대한민국 2022.01.01. 발효

다.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: 1년 (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소급 발급 가능)

4. Bokang NEWS

관세법인 보강 AEO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, 기업심사 관세사 안내

관세법인 보강 서울사무소

전화 02-2088-4047

팩스 02-2088-4067

허성빈 관세사 / 전나경 관세사



식품검역, 축산물검역, 식물검역, 수산물검역 전문업체.

부서별 전화번호 안내

■수출입통관업무 : 070-4014-3925 , 070-4014-3681

■검역업무 가공식품 : 070-4014-3694 ■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: 070-4014-3600

■경리 및 회계업무(세금계산서) : 070-4014-8973

■공용 대표 이메일 : bokang@bkcus.com ■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: tax@bkcus.com

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

kjy@bkcus.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.